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 (찬성자 12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782 호

다. 발의일자 : 2019. 7. 11.

라. 회부일자 : 2019. 7. 25.

2. 제안이유

-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“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는 한편,
-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예산 부담주체 및 범위를 놓고 혼란이 야기될 소지를 안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“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함(안 제3조제2항제5호).

나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관리주체로 명확히 하고, 시장이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) 포함사항 중 관련성이 부족한 “수목 식재와 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는 한편,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부담주체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) ① (생략)	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략)	② _____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	<삭제>
6. (생략)	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7. (생략)	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.	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먼저, 안 제3조제2항제5호 “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”은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와 연관성이 없고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¹⁾ 및 [별표 6]에 따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본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

1) 제11조(안전점검 실시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

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6]

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 (제11조제2항 관련)

1. 안전점검의 항목

- 가.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
- 나.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(老朽) 정도
- 다.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
- 라.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
- 마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
- 바.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

- 참고로, 2016년 3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 제3조제2항도 동 조례안과 같은 사유로 “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관리계획 포함사항에서 삭제한 바 있음.
- 다음으로, 안 제3조제4항은 현행 동 조항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시장이 과도하게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체계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관리주체 간에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.